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2023.0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부속약관은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카드사”라 한다)와의 신용카드(이하 “카드(하나 비씨 포함)” 라함) 계약에 있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래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재발급 등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

- ①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회원이 대체·추가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각 발급시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갱신된 카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및 이 부속약관은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 ② 카드가 갱신·대체·재발급의 사유로 신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도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및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구카드 폐기 전까지 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약 가맹점의 이용 등)

- ① 회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자동납부계약)된 가맹점에서의 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관리비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는 당초 신청한 카드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원은 비밀번호 입력거래가 필요한 가맹점(해외가맹점 포함) 이용시에는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조회기 등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④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 가맹점(PG업체 등)과 카드사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현금카드기능 부여)

하나은행계좌를 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현금카드기능을 부여하여 드리며, 회원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 라 함)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카드기능과 관련된 사항은 은행의 ‘현금카드 이용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연회비 등의 차등적용)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는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의 등급별, 종류별 금액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 조(가맹점 거래의 취소)

회원과 가맹점이 거래 취소를 합의하고 회원이 취소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회원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를 지양합니다. 다만, 회원의 기망행위 등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 7 조(결제금액의 변동)

지정결제일의 결제금액은 이용대금명세서 작성기준일에 확정됩니다. 다만, 이용대금명세서 작성기준일 이후라도 매출취소, 청구보류 등 결제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제금액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한도의 특례)

후불식 교통요금, 항공기, 기내판매 등 카드사가 지정한 특정 승인건에 대해서는 이용한도에 관계 없이 무승인 거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할부거래 및 분할납부)

- ① 회원은 표준약관 제11조 1항에서 지정한 가맹점에서 최저 5만원부터 2회 분할 납부 및 할부 구입이 가능합니다.
- ② 2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에 의한 분할납부는 철회권 및 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③ 결제조건 변경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개월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 10 조(자동이체결제 및 취소매출의 청구)

- ①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출금기관의 사정으로 정상처리 되지 못한 경우에는 출금기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할부 등 분할 납부하는 매출 건은 당사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매입되어야 할부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상계)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또는 표준약관 제29조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사유로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분실·도난 보상신청 기한)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3조(약관 상호위반시의 책임)

회원이 표준약관 및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표준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여신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